

보도참고자료

स्था स्थापिता । १९३३ न्यूय भी

보도시점 2024.11.1.(금) 10:00

배포

2024.11.1.( 금) 8:30

# 공정위,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조회 실시

- 11월 20일(수)까지 기업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제3자 의견 제출 가능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쟁점과 다양한 적용 사례를 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월 1일(금)부터 11월 20일(수)까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 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통한 경쟁의 촉진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촉진함 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테크 등 신산업부문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다양한 노력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후테크 산업부문\*에서 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활용 노력이 경쟁법 집행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24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 탄소배출 감축 및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혁신기술

가이드라인은 기후테크 산업부문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 들의 활동과 관련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설명하고 공정

거래법상 유의하여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 공정위 심결례, 국내 기업대상 설문조사, 해외 경쟁당국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의 사례를 수집하여 대표적인 사례(가상사례 포함)를 선별하여 구성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추후 관련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본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 등은 오는 11월 20일(수)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의견 제출 방법

- ▶ 이 가이드라인(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0일까지 ①초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우: 30108)
  - \* 전자우편: hope1057@korea.kr

[별첨]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안) 전문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준헌 (044-200-4327)
담당 부서		담당자	사무관	박주영 (044-200-4328)







# 붙임 주요 내용

# 공동행위

- □ (개요) 「공동행위 심사기준」등 현행 법령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기후테크 산업분야에 적용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설명
- □ (유형별 사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의 유형을 공동연구개발ㆍ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 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
  - 유형별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시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및 관련 사례를 제시

	부당성이 낮은 경우		
구분	공통기준	개별기준	
공동연구개발. 기술제휴	• 참가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경우 •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 연구개발의 대상이나 기간이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 경우 • 가격 등 중요한 경쟁요소 관련 필요범위外 정보교환 차단조치가 있는 경우 •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연구개발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상호 라이선스 혹은 특허풀을 공정하고 타당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율적 표준	<ul> <li>가격 등 중요한 경쟁수단에 관한 합의나 정보교환이 미포함</li> <li>표준 개발 및 채택과정이 투명하고 모든 사업자들의 참여가 가능</li> <li>표준 개발 및 채택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도 표준의 채택 혹은 인증의 획득에 차별없이 접근 가능한 경우</li> <li>표준의 준수 여부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 가능하며, 미준수 사업자에게도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경우</li> <li>그 표준이 사업자단체의 소속사업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는 경우</li> </ul>		

7 出	부당성이 낮은 경우				
구분	공통기준	개별기준			
	• 그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 혹은 사양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 그 표준을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증가가 상품·서비스의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				
공동생산	•참여사업자의 <b>합계 시장점유율이</b>	・총 생산공급에서 공동생산이 차지 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공동구매	높지 않고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는경우가격 등 중요한 경쟁요소 관련 필요	•총 생산비용에서 공동구매한 원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공동물류. 판매제휴	범위外 정보교환 차단조치가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들의 참여가 자유롭고 제한이 없는 경우	<ul> <li>・대상상품의 전체 공급비용에서 공동 물류・판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li> <li>・물류・판매 외 사업활동에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li> </ul>			
정보교환	<ul> <li>참여사업자의 수 및 합계 시장점유율이 낮은 경우</li> <li>주요 경쟁요소와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li> <li>해당 정보의 수집 및 공유 필요성이 높은 경우</li> <li>정보공유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유기간이 짧은 경우</li> <li>참여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활동 가능한 경우</li> </ul>				

# 2 단독행위

- □ (개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법령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기후테크 산업분야에 적용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설명
- □ (유형별 사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제시

○ 유형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들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및 관련 사례를 제시

구분		부당성이 낮은 경우		
		공통기준	개별기준	
거래 거절	공동거래거절		• 법령에서 정하거나 사업자단체의 자율기준 등 <b>합리적으로 설정된</b>	
	기타거래거절	• 거래조건을 제시 후 거래상대방과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자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b>불특정</b>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	구입강제	동의를 얻은 경우	• 거래상대방이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이익제공강요	• 효율성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개선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거래대금에 합리적으로	
	불이익제공	<b>효과를 현저히 상회</b> 하는 경우	<b>반영</b> 된 경우 • 경영간섭의 경우, <b>법령의무준수를</b>	
	경영간섭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속 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봉쇄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친환경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거나 지속적 투자를 위한 수요 확보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구매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환경적 측면의 개선을 위해 도입한 고유기술로 특정 거래상대방에 의한 전문적인 유지·보수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친환경상품의 적극적 유통 및 판촉을 위한 투자유도를 위해 유통 업자에게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하는 행위 •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업자와만 거래하는 선택적 유통의 경우 •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안)

# I. 목적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통한 경쟁의 촉진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다양한 노력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공 동의 혹은 단독의 노력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 Ⅱ. 적용범위

- 1. 이 가이드라인은 제40조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제51조제1항제1호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포함) 및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에서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 2. 이 가이드라인에 우선하여,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33호),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91호),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5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87호)이 적용된다.

# Ⅲ.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 (제51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포함)

- 1.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도 먼저 경쟁제한 효과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 (1)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하고(예컨대 가격·산출량의 결정·제한이나 시장·고객의 할당 등) 그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되는 시장의 구조, 거래형태, 경쟁상황 등 시장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은 하여야 한다.
- (2)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예컨대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 에는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공동행위 심사기준 V.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하가 적용된다.
- 2.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V. 3. 가. 에 따른 효율성증대 효과를 고려한다. 그 결과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사업자간의 합의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격·산출량의 제한, 시장·고객의 할당, 경쟁자배제, 혁신 저해 등과 같은 경쟁제한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 나. 행정기관이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였거나 용이하게 하였거나 혹은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합의가 환경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을 수 있다.
- 3.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특정 사업자단체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회원 사업자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홍보는 가격, 생산량 등 주요 경쟁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 도록 하였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회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도록 하였다.
  - 특정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법령상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가 달성해야 할 재활용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 사업자로 하여금 자사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선언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회원 사업자의 동의하에 각 사의 달성률을 단체의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 특정 사업자단체의 회원 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원 절약을 위해 재생 포 장지로 전환하고자 노력해 왔다. 해당 단체는 이러한 노력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기로 하였다.
  - 특정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 일부는 해당 상품 제조 과정에서의 온 실가스 배출량 산출 방법, 에너지 절약 대책,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한 경험 등 모범 사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참고로 삼았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가격 등 중요한 경쟁요소와 관련된 사항은 교환하지 않았다.
  - 특정 사업자단체는 회원 사업자의 생산공정에서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

하여 회원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설정해야 할 냉난방 온도 기준 및 절전 효과가 있는 권장 LED 전구를 정하였다. 냉난방 온도 설정이나 LED 전구 사용 여부는 회원 사업자 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의 유형별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시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가. 공동연구개발 · 기술제휴

- (1) 사업자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크로스 라이선스, 특허 풀, 멀티 라이선스 등을 통하여 다수의 사업자들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보완하는 기술제휴도 할 수 있다.
- (2) 기술 혹은 비용 측면에서 단독으로는 그러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참가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경우
-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면, 직접적으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연구 혹은 개발연구의 경우에는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연구개발의 대상이나 기간이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 경우
- 참여사업자간 가격, 수량 등 중요한 경쟁요소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교환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연구개발 이후의 제조·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상호 라이선스 혹은 특허 풀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으로 실시하는 경우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1]

특정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나, 해당 연구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 일부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 등 중요한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교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공동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제조·판매 사업이나 각 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일절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다.

# [예시2]

특정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제조 기술을 이용하면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할 수 있다. 해당 제조 기술의 이용은 국제적인 표준이 되고 있으며, 관련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해당 제조 기술의 이용에 필수적인 특허는 위 제조·판매 사업자 3개사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서로가 보유한 필수특허를 상호 라이선스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라이선스 조건 협상시 상품 가격 등 중요한 경쟁요소인 사항에 관한 정보교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각사가 실시하는 관련 연구개발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1]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들 일부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새로운 장치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각 제조사는 비용 절감과 제작방식의 편의를 위해 해당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최대화하지 않고 규제를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각 사가 향후 독립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 및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경우에,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참가사업자의 연구개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술 및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예시2]

특정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들 일부는 어떤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조 방식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참여사업자들은 공동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함께 결정하였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경우에, 가격과 같은 중요한 경쟁요소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나. 자율적 표준

- (1) 사업자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서비스의 종류, 품질, 규격 등과 관련하여 업계의 자율적 표준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대한 규격을 공동으로 정하여 널리 보급을 추진할 수 있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가격, 생산량 등 중요한 경쟁요소에 관한 합의나 이에 관한 정보교환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표준의 개발 및 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이해관계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경우
- 표준의 개발 및 채택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도 표준의 채택 혹은 인증의 획득에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한 경우

- 표준을 따를지 여부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기 로 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 표준을 채택한 사업자에게 인증을 발부하는데 있어서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경우
-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 혹은 사양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 표준을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증가가 상품·서비스의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1]

일부 시리얼 제조·판매업체들은 매년 시리얼 포장재의 크기를 키워왔다. 이는 시리얼 구매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비 경향이 반영된마케팅 전략에 따른 것인데, 환경단체에서는 이러한 과대포장이 환경에많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한사업자들은 시리얼 포장재의 규격 중 초과분을 3% 이내로 하는 표준을제정하고 이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환경적 편익은 물론포장 비용이 약 10% 감소하여 소매가격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는것이 확인되었다.

#### [예시2]

특정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특정 원자재 대신 대체 원자재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해당 상품의 제조 판매 사업자들은 해당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업계 전체가 노력하기 위해 대체 원자재를 사용하는 상품 규격을 설정하고,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42호)에 따라 이 규격에 적합한 상품에 대해서는 탈탄소화에 대응하는 상품임을 나타내는 인증 라벨을 부착하여각 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체 원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이전보다 내구성 향상이나 경량화 등 명백한 품질 향상이 인정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원자재는 없는 상황이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1]

특정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들 일부는 자원순환에 기여하기 위하여이미 사용된 특정 상품을 각 사가 회수하여 이후 제조공정에서 원자재로 재활용하기로 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해당 상품의 규격을 정했다. 다만, 이 참여사업자들은 규격 설정을 계기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전가하기 위해 최종 상품의 판매가격 인상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 [해석]

이 예시에서와 같이 공동의 규격을 결정하는 것을 계기로 가격과 같이 중요한 경쟁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공동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예시2]

특정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로 구성된 어느 사업자단체는 일부원자재 대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대체 원자재를 사용한 상품의 규격을 설정하고, 동일 규격에 적합한 상품에 대해서는 탈탄소화 상품임을 나타내는 인증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대체원자재와 동등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또다른 대체원자재에 대해서는 회원 사업자 중 소수만 사용하고 있다는이유만으로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 원자재로 인정하지 않았고, 미인정된대체원자재를 사용한 상품의 제조·판매를 계획했던 회원 사업자는 인증라벨을 부착할 수 없어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판매량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사업자단체가 자율적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기준과 동등한 성능을 갖는 규격 혹은 사양을 배제함으로써 소속 사업자일부에게 자율적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예시3]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어떤 사업자단체는 해당 서비스 제공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회원 사업자가 매년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동 사업자단체가 관리하는 필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사업자단체가 자율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회원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설비의 이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다. 공동생산

- (1) 사업자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와 공동 출자회사나 OEM을 통해 공동생산을 시도할 수 있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공동생산 참여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이들 이외에도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경우
- 대상 상품의 총생산비용에서 공동생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참여사업자간 가격, 수량 등 중요한 경쟁요소와 관련하여 공동생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교환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 공동생산에의 참여가 자유롭고 제한이 없는 경우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기술을 보유한 업계의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상품 제조를 전량 위탁하기로 하였다. 두 사업자는 가격과 같이 중요한 경쟁요소 관련 정보의 차단 조치를 취하였고, 독립적인 판매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해당 상품의 제조·판매 시장에는 다른 유력한 사업자가 복수 존재한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2개 사업자는 해당 상품시장에서 합계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두 사업자는 제조·판매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제조 거점이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을 실시하였다. 즉, 중복되는 제조 거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자가 자사의 제조 거점을 폐쇄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처럼 상대방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상품의 수량은 두 사업자가 각자 생산하는 총 수량중 50% 가량에 달한다.

# 라. 공동구매

- (1) 사업자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원자재, 부품, 설비를 조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희소하거나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공동구매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공동구매 참여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이들 이외에도 구매시장에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경우
- 대상 상품의 총 생산비용에서 공동구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참여사업자간 가격 등 중요한 경쟁요소와 관련하여 공동구매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교환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 공동구매에의 참여가 자유롭고 제한이 없는 경우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서비스 제공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정제된 특정 연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당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적어서 사업자가 단독으로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과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 사업자는 해당 연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공동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공동 조달시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공유하고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교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 중 연료비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연료비에서 해당 연료의 비중은 낮고 다른 연료도 병행하여 각사가 독자적으로 조달한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조되는 어떤 상품의 일부 제조·판매 사업자는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 시장에서 합계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한다. 위 사업자들은 상품 제조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할 수 있는 대체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공동조달을 결정하였다. 이때, 위 상품의 제조를 위한 전체 비용 중 해당 대체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참여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전체제조 비용 중 공통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마. 공동물류 · 판매제휴

(1) 사업자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배송을 공동으로 하거나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물류의 효율화 및 탄소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업무나 판매 촉진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개선된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거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공동물류·판매제휴 참여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이들 이외에도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경우
- 대상 상품의 공급에 필요한 전체 비용에서 공동물류·판매제휴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
- 물류 판매 이외에 참여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
- 참여사업자간 가격 등 중요한 경쟁요소와 관련하여 공동물류·판매제휴 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교환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 공동물류 판매제휴에의 참여가 자유롭고 제한이 없는 경우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1]

일부 소매업자들은 자사의 상품 배송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배송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정한 경로에서 공동으로 배송하 기로 하였다. 참여사업자들은 해당 공동배송 실시시 각 점포에서 판 매하는 상품 가격이나 수량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 차단조치를 강구하였다. 각 점포의 상품 판매 비용에서 공동물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고, 참여사업자들의 합계 시장점유율도 높지 않다.

#### [예시2]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각 사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연구 개발 성과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켰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수요자의 인식이 개선되지는 않아 수요가 늘지 않고 있다. 이에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는 해당 상품의 제조과정의 개선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단체의 회원 사업자 간 상품 가격 등 중요한 경쟁 요소와 관련된 정보교환을 하지 않고, 회원 사업자들은 독립적인 판매 활동을 지속하였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1]

특정 상품의 일부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운송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각 사가 보유한 물류 센터를 상호 개방하여 효율적인 운송에 활용하기로 했다. 참여사업자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약 70%로 상당히 높은데,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서로의 상품 가격 혹은 수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판매 가격의 인상 폭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공동물류 참여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참여사업자간 가격 혹은 수량과 같은 중요한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에는 담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실제로 판매가격의 인상 폭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예시2]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해당 서비스 제공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판매제휴를 통하여 수요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참여사업자들은 해당 서비스 제공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보를게재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여기에 공동으로 결정한 서비스 참고가격을 기재하였다.

#### [해섴]

이 예시에서와 같이 판매제휴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판촉 혹은 홍보를 기화로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예시3]

바닥재 제조·판매업체 3개 사업자는 바닥재의 환경적 성능에 관한 홍보를 하지 않기로 하는 비경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를 경우 예컨대, 특정 제품의 화학물질 방출량을 고객에게 공개할 수 없고, 제품의 포장재에 유해 물질의 포함 여부를 표시할 수 없다.

# 바. 정보교환

- (1) 사업자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 제조 혹은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수집 및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공유는 사업자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홍보, 표준화 등을 위한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공유는 가격이나 수량과 같이 중요한 경쟁요소와 관련된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담합을 은폐하는 방편이 될 위험도 있다.
- (2) 이러한 정보교환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시장상황, 시장의 구조 및 상품의 특성,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교환된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 행위 의 양태, 정보교환의 목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1]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시장에서 합계 시장점유율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일부 사업자들은 각각 해당 상품 이용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품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데이터를 가급적 많이 수집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관련 사업자들은 독립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자사가 판매한 상품이 이용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여 서로의 연구개발 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수집 및 공유하는 데이터는 수요자를 익명화 또는 추상화하여 제공되며, 그 범위도 상품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한정되고, 가격, 수량 등 중요한 경쟁요소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수반될 수 있는 수량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 [예시2]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부 사업자는 상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제조공정 일부를 담당하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사업자들의 공급능력이나 부담 가능한 비용과 같이 중요한 경쟁요소에 관한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 분석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참여사업자들은 각 사의 영업 부문 담당자를 포함하지 않는 특별팀을 구성하고, 해당 팀에서 참여사업자들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로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정보를 해당 팀 외부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의사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통계 처리하거나 가공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공유하기로 하였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해당 서비스 제공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비스 개선 검토에 활용될수 있도록 회원 사업자 각 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때 회원 사업자 각 사가 개별 고객에게 제시하는 해당 서비스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도 함께 수집하여회원 사업자 간에 공유하였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사업자단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기화로 가격, 수량 등과 같은 중요한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다.

# Ⅳ.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1. 사업자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

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이하의 거래거절(제1호), 거래상 지위남용(제6호), 구속조건부 거래(제7호) 이외의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 거래거절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혹은 사업자 단독으로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특정한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거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어떤 사업자가 자사의 공급망 전체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자사가 설정한 일정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거래해 왔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경우
- 일정한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해당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대해서 인증 라벨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업자가 제조한 상품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 져서 사업자단체가 인증 라벨의 발행을 거부한 경우

#### 가. 공동의 거래거절

- (1)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즉, 법령에서 정하거나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합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는 공동의 거래거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공동의 거래거절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수단임이인정되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수단인지,비용상 합리적이면서도 덜 경쟁제한적인 수단이 없는지,가격 혹은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들 일부는 업계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 의무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상품 제조에 필요한 특정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일부는 신소재를 사용하여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제품에 비해 대폭 감축한 새로운 상품을 각자 개발했다.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신소재는 신상품의 제조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참여사업자들 중 일부는 예전부터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신규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해당

신소재의 판매 사업자 다수에게 위의 신규사업자에게는 해당 신소재를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참여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공동의 거래거절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나. 그 밖의 거래거절

- (1) 사업자가 단독으로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즉, 법령에서 정하거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의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는 그 밖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거래거절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수단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수단인지, 비용상합리적이면서도 덜 경쟁제한적인 수단이 없는지, 가격 혹은 품질에 관한소비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일부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 위 사업자는 자신의 공급망 전체에 대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일부 부품들의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5% 감축한 상품을 조달하고 싶었지만, 해당 부품들을 제조·판매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위와 같은 요구를 충족하는 부품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시장에서 5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자신의 특정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해당 사업자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단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명목을 들어, 자신이 지목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말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거래거절은 부당한 거래 거절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3.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자가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구속력 혹은 강제력이 수반되어거래상 지위가 남용되는 경우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어떤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소비생활 변화를 장려하는 컨소시엄을 운영하기로 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이 컨소 시엄에 참여할 것과 일정한 협찬금 납부를 요구한 경우
- 어떤 사업자가 자사 상품의 공급망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공급망 내 각 단계의 배출량 데이터를 집약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플랫폼에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경우
- 어떤 상품의 제조 판매 사업자가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자사 상품 운송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비화석 에너지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운송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
- 어떤 사업자가 자사 제조 상품의 폐기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자연에서 분해되는 원자재를 사용하기로 하고, 자사 상품의 부품 을 제조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새로운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경우

# 가. 구입강제

- (1) 사업자가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거래상 대방 사업자에 대하여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 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 (2) 구입강제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구입 강제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수단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수단인지, 비용상 합리적이면서도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다른 수단이 없는지, 가격 혹은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한다. 또한 구입요구를 거부하는데 따르는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기타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사업자가 자신의 공급망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요구되는 사양을 지시하면서 여기에 필요한원재료 혹은 설비를 자기 혹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로 인한 비용상승 발생시 거래대금 협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구입요구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어떤 사업자는 해당 상품의 폐기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자연에서 분해되는 대체 원자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제조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자는 새로운 상품이 대체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 판매 촉진으로 연결하고자 특정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대체 원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 해당 부품을 제조하도록 지시하였다. 특정 상품의 제조판매 사업자는 부품 제조판매 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사양을 명확히 제시한 후 대체 원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상승한 비용을 반영하여 거래가격 변경에 관한 협상을 하였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상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사업자는 위 상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거래상대방이 이미 동등한 시스템을 도입하였거나 해당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제조시 해당 사업자가 지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향후 발주하지 않겠다고 암시하며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온실가스 측정 시스템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요 혹은 강제하는 행위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한 구입강제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나. 이익제공강요

- (1) 사업자가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거래상 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 (2) 이익제공강요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이익제공강요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수단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수단인지, 비용상 합리적이면서도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다른 수단이 없는지, 가격 혹은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요구되는 경제적 이익이 그것을 부담함으로써 얻게 되는 직접적인 이익, 예컨대 거래상대방의 상품 판매·매출 증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이익보다 크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익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 요구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협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승한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가 적정하게 지급된 경우
- 이익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1]

가전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어떤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경쟁사업자 및 거래상대방 사업자와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탈탄소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보급 및 계몽하는 활동을 하는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정 협찬금 지불이 요청된다. 해당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컨소시엄에 자사도 참여하고 싶다는 신청을 받았는데, 거래상대방에게 협찬금의 금액이나 용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에 거래상대방의 검토 및 동의를 거쳐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했다.

# [예시2]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어떤 사업자가 공급망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량을 가시화 하기 위해, 공급망 내 각 거래 단계별 배출량 데이터를 집약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사업자는 영업비밀 등 공유를 원하지 않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데이터를 제공한 모든 사업자에게 플랫폼상의 배출량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은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거래상대방에게는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1]

특정 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운송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망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거래액에 따른 일정 '온실가스 감축 대책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때 해당 운송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비용' 산출 근거 및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징수한 비용을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에 사용하지 않았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기대되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부담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행위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상당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한 이익제공강요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예시2]

어떤 소매업자가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미리계약으로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납품한 상품 포장재를 현장에서 회수하는 업무에 무상으로 종사하게 했다. 이러한 업무로 인해해당 납품업자에게 일정한 부담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업무에는자사가 납품하지 않은 상품의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비용을 거래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한 이익제공강요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다. 불이익제공

- (1) 사업자가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구입 강제, 이익제공강요, 경영간섭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행위가 대상이 된다.
- (2) 불이익제공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불이익제공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수단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수단인지, 비용상 합리적이면서도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다른 수단이 없는지, 가격 혹은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일방적 요구에 관하여 추후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얻은 경우
- 거래상대방이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일방적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거래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된 경우
- 불이익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

어떤 사업자는 특정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기계설비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래상대방들은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따르는 비용상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검토하였고, 이를 거래대금에 적정한 수준에서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상품을 제조하는 어떤 사업자는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상대 방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기계설비 도입을 지시하고, 해당 기계설비 도입 후 즉시 일정 수량을 발주하기로 확약하였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업자는 거래상대방들이 해당 기계 설비 도입에 착수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였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거래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한 불이익제공으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라. 경영간섭

- (1) 사업자가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일정한 원재료 혹은 부품으로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급부를 제공하는 특정한 방법 으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 상이 된다.
- (2)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특히 거래대상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의 개선을 위하여 그러한 간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와같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경영에 대한 다소간의제약은 정당화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참조). 또한그러한 간섭, 예컨대 거래상대방에게 경영상 민감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제재를 수반하는 강요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8478 판결 참조).
-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이 제재를 수반하는 강요 혹은 강제로서 이루어지는 경영간섭으로 문제될 수 있다.
- (3) 경영간섭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경영간섭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수단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수단인지, 비용상 합리적이면서도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다른 수단이 없는지, 가격 혹은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수단으로써 경영간섭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 경영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4)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자재가 아닌 환경을 고려한 대체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지 문의하면서 부품 단가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 결과 대체 자재 조달 가격이 기존 사용 자재의 조달 가격보다 비싸짐에 따라 이러한 추가비용을 반영하여 부품 단가를 변경하였다.

# (5)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계약기간 중 해당 부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생산방식, 시설규모 등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는 연구개발비를 비롯한 비용 증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는이러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종래와 동일하게 부품 단가를 책정하였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계약기간 중 새로운 사양으로의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면서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한 경영간섭으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4.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자와의 거래, 판매지역,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한 새로운 부품을 개발한 사업자가 생산 설비 증강을 위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에게 향후 몇 년간 자사의 부품을 일정량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 기존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 장점을 높인 제품을 개발한 사업자가 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게 경쟁상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경우
- 어떤 사업자가 기존 제품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 제품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고액의 설비 투자를 한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하여투자회수를 보장하는 경우
- 어떤 사업자가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자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도매업자에게만 이 상품을 공급하기로 할 뿐 아니라, 이들 도매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유통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경우

# 가. 배타조건부거래

- (1) 사업자가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를 회수하거나 지속적 투자를 위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자기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된다.
- (2)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배타조건부거래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수단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수단인지, 비용상 합리적이면서도 덜 경쟁제한적이거나 혹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의사결정을 덜 저해하는 수단이 없는지, 가격 혹은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행위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시장점유율이나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상당한 봉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를 회수하거나 지속적 투자를 위한 수요 확보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거래상대방에게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도입한 고유한 기술로 인해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 의한 전문적인 유지·보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서는 각별한 판매촉진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에 다른 사업자가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제품에 비해 대폭 감축한 새로운 부품을 개발한 사업자는 기존 부품의 제조·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5%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이지만, 이외에도 시장점유율 각각 20%, 15%를 가진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하며, 해당 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위의 1위 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대량 생산하려면 생산설비 증강을 위한 일정 투자가 필요한데, 확실한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자사의 해당 부품 구매를 희망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비용 회수에 필요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일정량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2, 3위 등 경쟁사업자들도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한 새로운 부품 판매를 시작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부품을 조달하려는 사업자와의 거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1]

기존 제품에 비해 환경적 측면에서 개선된 새로운 상품의 판매를 시작하는 사업자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려는 소매업자에게 경쟁상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 사업자는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이며, 이러한 의무화를 통하여 경쟁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가 대체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질 정도로 상당수 소매업자가 경쟁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경쟁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가 무임승차 할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도 아니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배타조건부거래를 통해 상방 혹은 하방시장에서 상당한 봉쇄효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효율성 증대 효과보다 경쟁제한 효과가 큰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예시2]

A는 제조·판매업체들이 사용한 포장재의 회수·처리를 독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의 계약을 맺고 법령 에 따라 제조·판매업체에 부과된 폐기물 처리 의무를 수수료를 받고 대신 처리해 온 것인데, 이는 환경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 [해설]

해당 사업자가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명목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제조·판매업체들은 여러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 결과,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불리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시장을 개방했을 때상당한 비용 절감과 폐기물 분류·처리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사례도 있다.

#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1) 사업자가 친환경적인 상품의 적극적 유통 및 판촉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하는 행위 혹은 일정한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업자에게만 자사의 친환경적인 상품을 취급하도록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 된다.
- (2)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수단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수단인지, 비용상 합리적이면서도 덜 경쟁제한적인 수단이 없는지, 가격혹은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 친환경적인 상품의 유통·판촉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그 회수를 보장

하기 위하여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하는 경우

- 자신의 공급망 내에서 일정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배출량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상대방에게만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기준은 합리적이고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 유기농 혹은 친환경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에게만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3)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 [예시1]

특정 사업자가 새롭게 판매하는 수송 기기는 기존 제품에 비해 에너지절약 성능이 우수한데, 특수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유통업자가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위해서는 유통업자 스스로 고액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전용 설비설치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자는 유통업자가 전용 설비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새로운 수송 기기에 대해서는 일정 지역에서의판매를 특정 유통업자에게만 할당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판매 활동및 수리, 유지보수 업무 관련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 수송기기 제조·판매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다른 유통업자에게는 새롭게 판매하는 수송 기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이러한지역할당제는 이를 위반한 유통업자를 제재하는 엄격한 지역제한은아니고, 해당 지역 외의 고객의 요구에 응한 수동적 판매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예시2]

3개 제조·판매 사업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특정 상품이 있다. 이때 기존 제품에 비해 제조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크게 감축한 새로운 상품 개발에 성공한 어떤 사업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시작함에 있어 자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상품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감축할 목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 업자에게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도매업자에게만 자사의 새로운 상 품을 공급하고, 이러한 도매업자에게는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소매업자에게만 해당 상품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기준은 모든 유통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30%를 넘지 않는다.

# (4)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예시1]

기존 제품에 비해 환경적으로 개선된 새로운 상품 판매를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상품의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상품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지역을 할당하고 지역 외고객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사업자는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상품과의 제품 차별화로 인해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지역을 할당하고 그 지역 외고객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엄격한 지역 제한의 경우에, 특히 행위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하고 이미 경쟁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효율성 증대 효과보다 경쟁제한 효과가 큰 부당한 거래지역 제한으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예시2]

A, B, C는 폐납산 축전지 수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A는 최근 수거 축전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했는데, 종래 이수거 축전지는 모두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다. B, C는 해당 공장의 용량이 상당한 것을 보고 자신들이 수거한 축전지 대부분을 A에게 판매하는 한편, 국내 수거 지역을 할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A는 B,

C에게 운송비 절감분의 일부를 환급하기로 하고, 축전기를 최대가 격에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해설]

이 합의로 인하여 수고 축전지가 국내에 판매됨으로써 비용절감으로 인한 효율성이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크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지역 제한으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예시3]

어떤 사업자가 새롭게 판매하는 특정 가전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에너지 절약 성능이 우수하지만, 조작 방법이 까다로워졌다. 따라서해당 사업자는 자신과 거래하는 도매업자에게 오프라인 판매를 하는 소매업자하고만 거래하도록 제한하였다. 사실 온라인 판매자도 조작방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오로지 오프라인 판매를 하는 소매업자에게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오프라인 판매를 하는 소매업자와 온라인 판매를 하는 소매업자간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상품의 제조·판매 시장에서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해설]

이 예시에서와 같이 거래상대방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제한한 결과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야기하는 경우 에는 효율성 증대 효과보다 경쟁제한 효과가 큰 부당한 거래상대방 제한으로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 끝 -